

2027년도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담당	소 속	성 명	전 화	팩 스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	윤도수	02-2240-2317	02-2240-3028
		전요셉	02-2240-238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www.suhyup.co.kr
어 선 안 전 조 업 부

목 차

Ⅰ. 용역개요
1. 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용역 범위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념도
2.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H/W 및 S/W 현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2. 상세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2. 사업자 선정방법
3.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및 제출서류
4. 입찰 참가시 조건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6. 제안서의 효력
7. 제안평가회 및 평가방법

별지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 주요 사업실적(총괄표)
5.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총괄표)
6.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7. 참여인력 총괄명부
8.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9. 제안서 작성서식
10. 가격제안서
1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Ⅰ 용역개요

1. 개요

ㅇ 용 역 명 :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 ’27. 1. 1. ~ 12. 31.(1년간)

ㅇ 소요예산 : 32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계약방법 :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5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어선안전관리 통신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ㅇ 시스템의 H/W, S/W 지속적인 성능 유지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Help-Desk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3. 용역 범위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ㅇ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상주인력(헬프데스크) 운영

ㅇ 시스템서버 및 운영SW 일체의 성능·기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수행

ㅇ 어선안전국에서 운용중인 통신시설(VHF송수신기·안테나·서지보호기·네트워크 및 전원설비 등) 및 원격제어시스템 일체의 유지보수

ㅇ STT엔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장애 시 긴급점검 수행

ㅇ DBMS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장애 시 긴급점검 수행

ㅇ 조난신호 미수신·오수신 검증 및 수신율 개선을 위한 HW/SW 개선

ㅇ 운영SW 전반에 대해 운영을 저해하는 오류 발생 시 수정 및 개선

ㅇ 타 시스템간 연동 및 데이터연계 필요 시 기술지원 수행

ㅇ 통신망 최적화를 위한 중계소 장치 철거 및 이전 지원 등

ㅇ 유지보수를 통한 어선안전관리통신망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

ㅇ 중계소 최적화를 위한 중계소 장치 철거 및 이전

ㅇ 사업장소

- 본부 및 안전국

순번	권역	안전국	주 소	비고
1	본부	상황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2	서해	인천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50	
3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남로 74-19	
4		태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7	
5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중앙길 7	
6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63	
7	남해	완도	전라남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54	
8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09	
9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비봉로 298-12	
10		삼천포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24-5 3층	
11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67-6	
12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82	
13		부산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 85	
14		제주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85, 2	
15	동해	속초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91	
16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23	
17		강릉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800	
18		동해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1	
19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30	
20		울산	울산시 동구 성끝길 2	
21		울릉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6-61	

- 무인중계소

순번	안전국	중계소	주 소	비고
1	인천 (5)	송신소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980	
2		백령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513-39	
3		연평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468번길 111	
4		덕적도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51-1	
5		소청도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서로 279	

순번	안전국	중계소	주 소	비고
6	군산 (5)	송신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공원1길 48	
7		어청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13-14	
8		오성산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69	
9		의상봉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98-11	
10		상왕등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산28	
11	태안 (2)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372-36	
12		신진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48	
13	보령(1)	옥마산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	
14	목포 (5)	송신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632-12	
15		진도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59	
16		흑산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49-10	
17		임자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150-1	
18		가거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172	
19	완도 (4)	송신소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039-2	
20		대둔산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산1-1	
21		금일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산223-1	
22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4	
23	여수 (4)	송신소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301-13	
24		거문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96	
25		거문서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167-110	
26		돌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백초길 28-29	
27	통영 (3)	송신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768-100	
28		용화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234	
29		욕지도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916-1	
30	창원 (2)	불모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산24	
31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길 478	
32	부산 (3)	송신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문동리 95-12	
33		태종대	부산시 영도구 전망로 118	
34		다대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145-1	
35	삼천포 (3)	송신소	경상남도 사천시 청송길 136-11	
36		남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1	
37		금오산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73-5번지	
38	제주 (5)	송신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09번길 88	
39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순번	안전국	중계소	주 소	비고
40		우도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길 105	
41		애월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1100로 1579-25	
42		성판악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4	
43	고흥 (2)	녹동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194-5	
44		나로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12-14	
45	속초 (2)	송신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109-5	
46		거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산1-2	
47	강릉 (2)	송신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00	
48		괘방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9	
49	동해(1)	삼척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278-1	
50	울진 (5)	송신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76	
51		죽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124	
52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65-4	
53		현종산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산10	
54		봉화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산20	
55	포항 (3)	송신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510	
56		수신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585	
57		영일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48-2	
58	울산(1)	봉대산	울산시 동구 주전동 747-4번지	
59	울릉 (5)	현포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652-5	
60		태하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등대길 188	
61		천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3길 14-3	
62		도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릉길 227-75	
63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 중계소 이전 설치 및 최적화로 인해 중계소 주소 및 개소 변경될 수 있음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념도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SSB, VHF-D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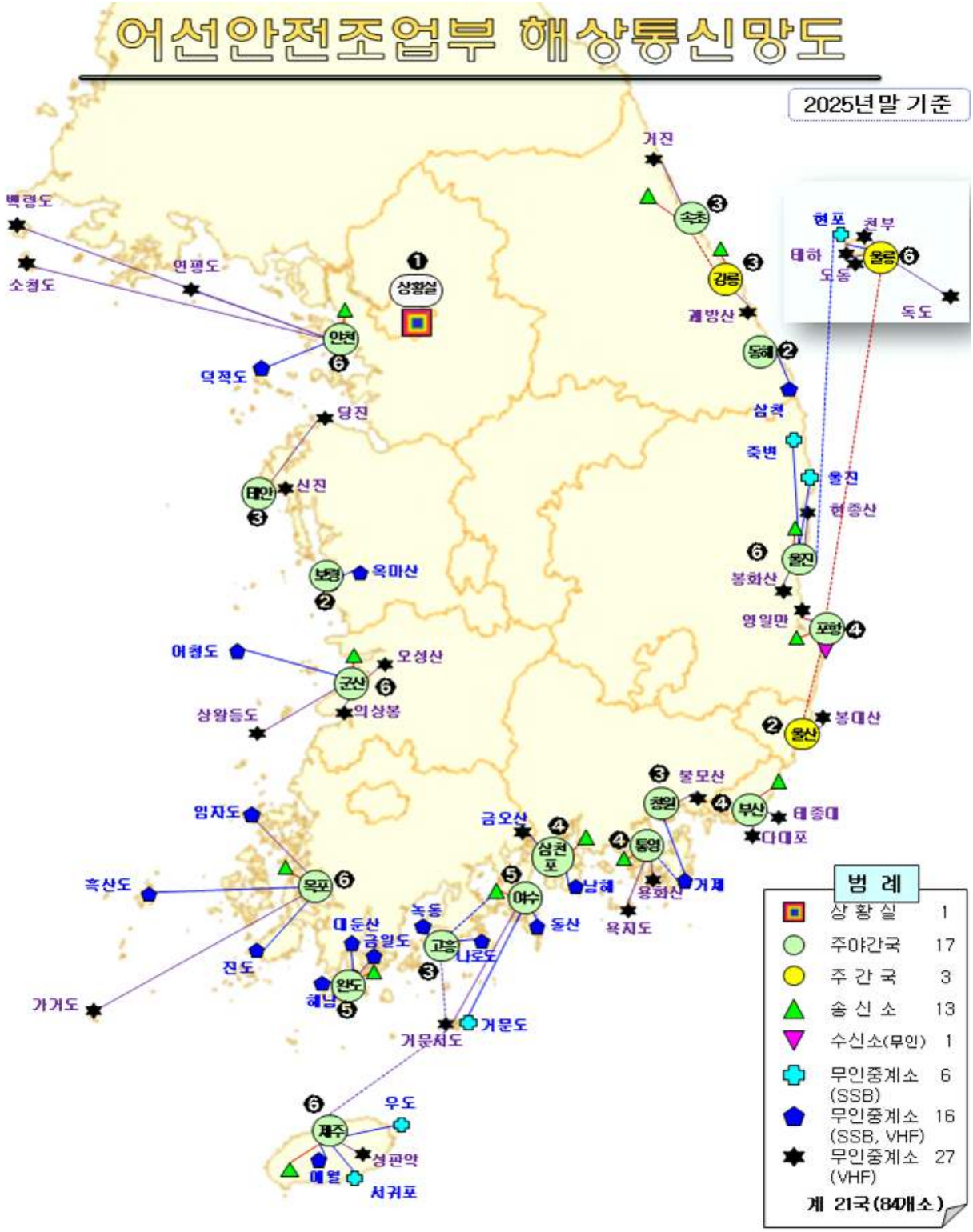

2. 시스템 구성도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SSB)

ㅇ 종합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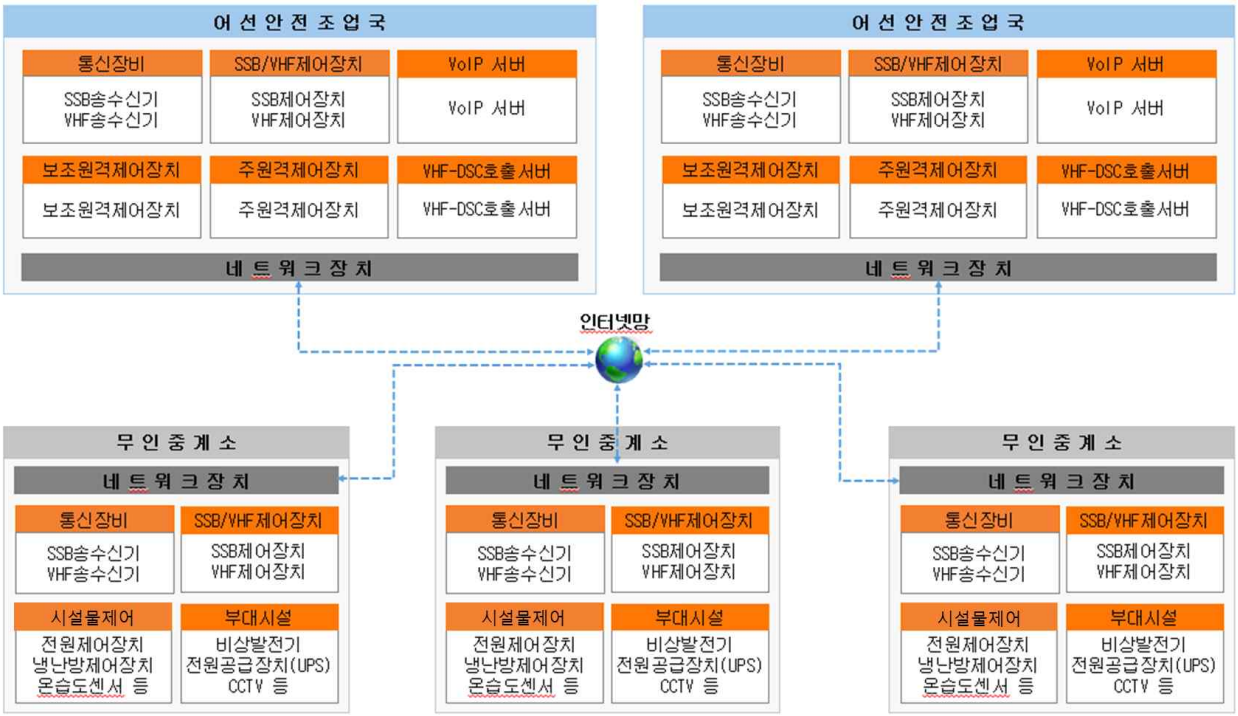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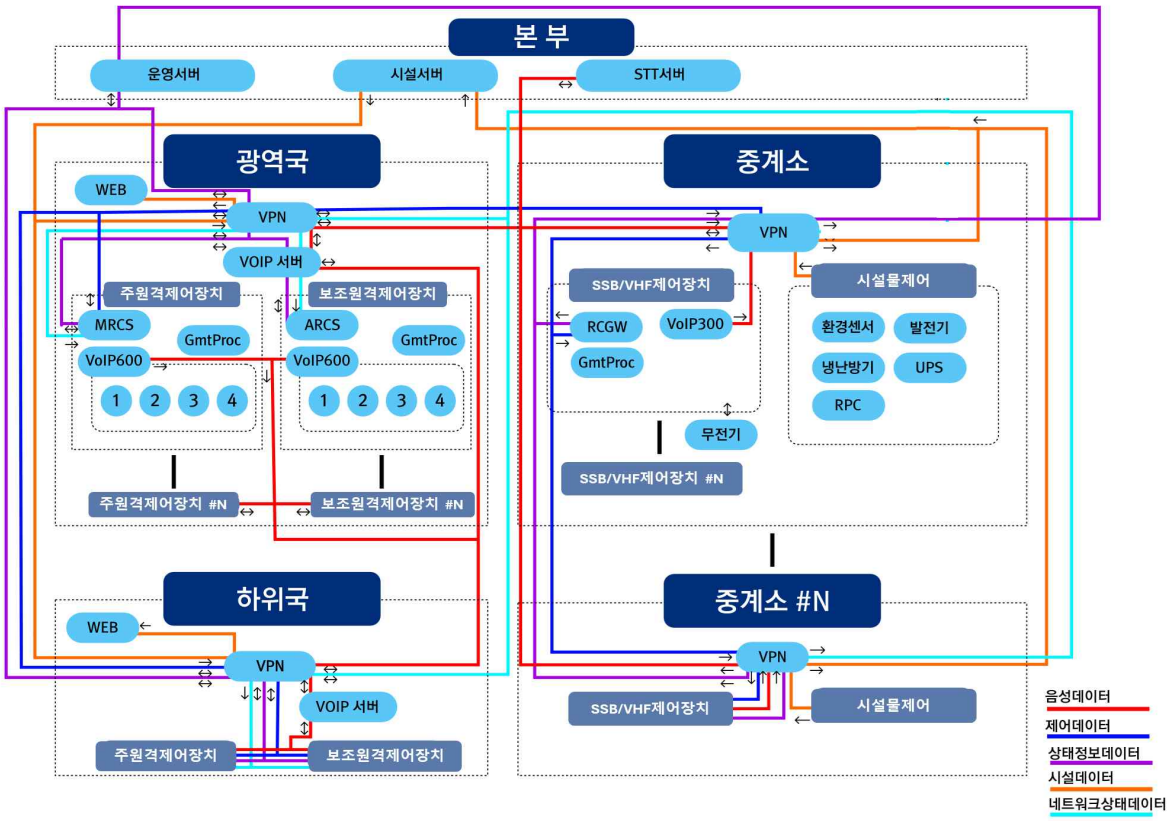

ㅇ HW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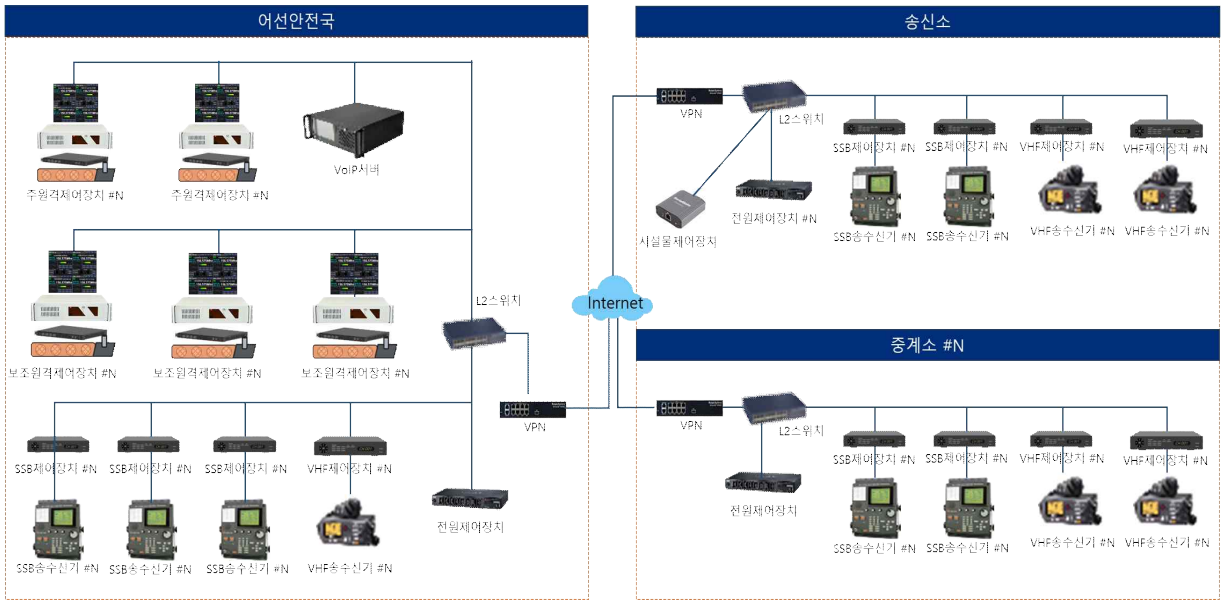

ㅇ S/W 구성도(음성 및 시설제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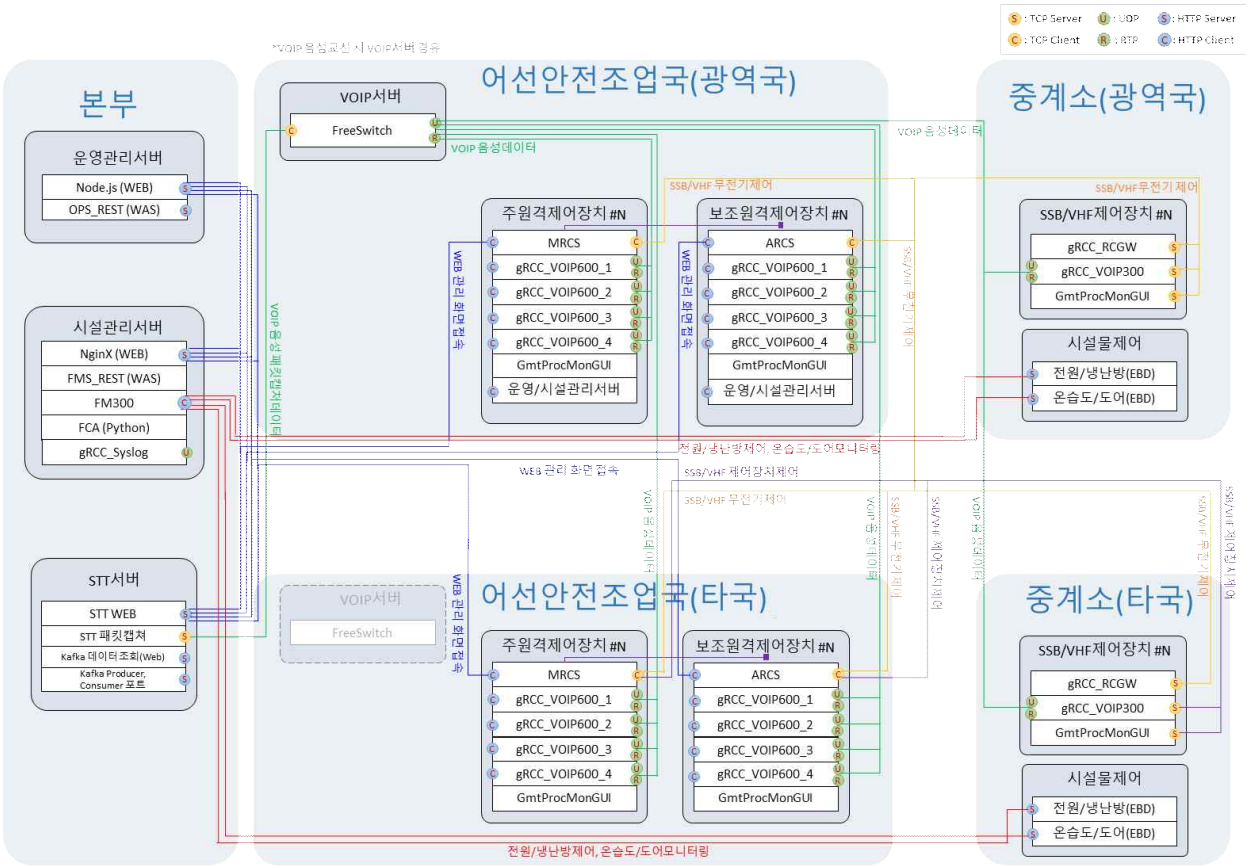

ㅇ S/W 구성도(DSC 제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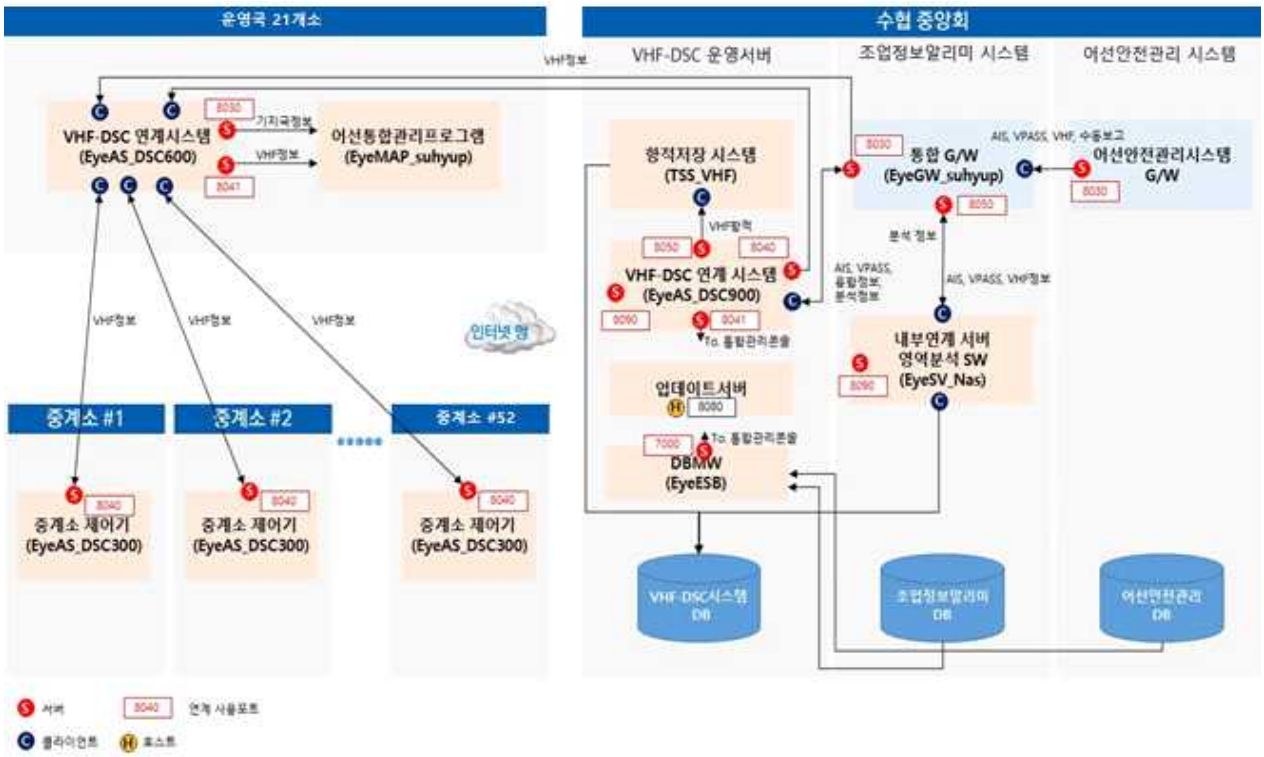

3. 시스템 HW 및 SW 현황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H/W)

구분	수량	설치장소	비고
· VOIP서버	17	인천안전국 등 17개소	
· STT서버	1	본부	
· 운영·시설관리 서버	1	본부	
· VHF송수신기(단독형)	12	인천안전국 등 10개소	
· VHF제어장치(송수신기일체형)	177	인천안전국 등 60개소	
· SSB제어장치	203	인천안전국 등 19개소	
· 주원격제어장치	42	인천안전국 등 18개소	
· 보조원격제어장치	113	인천안전국 등 20개소	
· 시설제어장치(JT600)	14	인천송신소 등 14개소	
· 전원제어장치(PDU)	93	인천송신소 등 71개소	
· L2스위치	113	인천안전국 등 84개소	
· VHF-DSC호출서버	21	본부 등 21개소	
· VHF안테나	175	인천안전국 등 69개소	
· UPS(Rack Type)	36	인천안전국 등 36개소	
합 계	1,018대		

나. 어선안전관리 통신망(S/W)

구분		수량	주요 기능	비고
광역 원격 제어 시스템	VoIP Svr	1식	PBX(Free Switch 기반) S/W - 통화 제어, 컨퍼런스 기능 - 사용자(내선번호) 등록/관리 기능 등	
	gRCC_VoIP300	1식	무전기제어장치 VoIP S/W - VoIP Callee(수신자) 기능 - 무전기 송수신 음성 패킷 전달 등	
	gRCC_RCGW	1식	무전기제어장치 제어 S/W - SSB/VHF 무전기 제어 연동 - MRCS/ARCS 제어 처리 등	
	gRCC_VoIP600	1식	주원격제어장치 VoIP S/W - VoIP Caller(발신자)기능 등 - 운영PC 송수신 음성 패킷 전달 등	
	MRCS	1식	주원격제어장치 제어 S/W - 동보TX, 동청RX, MIC PTT 제어 등	
	MRCS for Android	1식	주원격제어장치(Android 기반) 제어 S/W	
	ARCS	1식	보조원격제어장치 제어 S/W - 무전기 4대 제어, MIC PTT 제어 등	
	운영관리(WEB)	1식	원격제어장치 관리(WEB-GUI 기반) S/W - (주)(보조)원격제어장치 설치환경 관리 - SSB/VHF 무전기 설치환경 관리 등	
	운영관리(REST)	1식	데이터·상태정보 모니터링 REST S/W	
	시설관리(WEB)	1식	시설물 관리(WEB-GUI 기반) S/W - 온습도, 도어, 화재센서, RPC, 에어컨, UPS 발전기 설치환경 관리 등	
	시설관리(REST)	1식	데이터·상태정보 모니터링 REST S/W	
	시설관리(FM300)	1식	데이터·상태정보 체크 S/W	
	STT엔진	1식	STT변환 엔진 및 학습관리 S/W	
	STT메시지배포	1식	STT메세지 배포(Kafka 기반) S/W	
	Packet Sniffer	1식	RTP 패킷캡처 S/W	

구분		수량	주요 기능	비고
VHF-DSC 시스템	항적저장시스템 (TSS_VHF)	1식	VHF 위치정보 저장	
	연계 SW (EyeAS_DSC900)	1식	VHF-DSC 호출 및 스케줄링	
	연계분석 SW (EyeSV_Nas)	1식	위험영역 진입 분석 및 알림신호 발생	
	DBMW (EyeESB)	1식	데이터베이스 조회	
	통합GW (EyeGW_suhyup)	1식	실시간 위치정보 연계	
	연계SW (EyeAS_DSC600)	1식	VHF-DSC 호출	
	제어SW (EyeAS_DSC300)	1식	VHF-DSC 제어	
	어선통합관리시스템 (EyeMap_suhyup)	1식	전자해도에 위치발신장치 위치 통합 표출 VHF-DSC개별·위치호출 및 조난이력 조회	
합 계		**23식**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어선안전관리 통신망의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무중단운영 환경 조성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수행으로 시스템 관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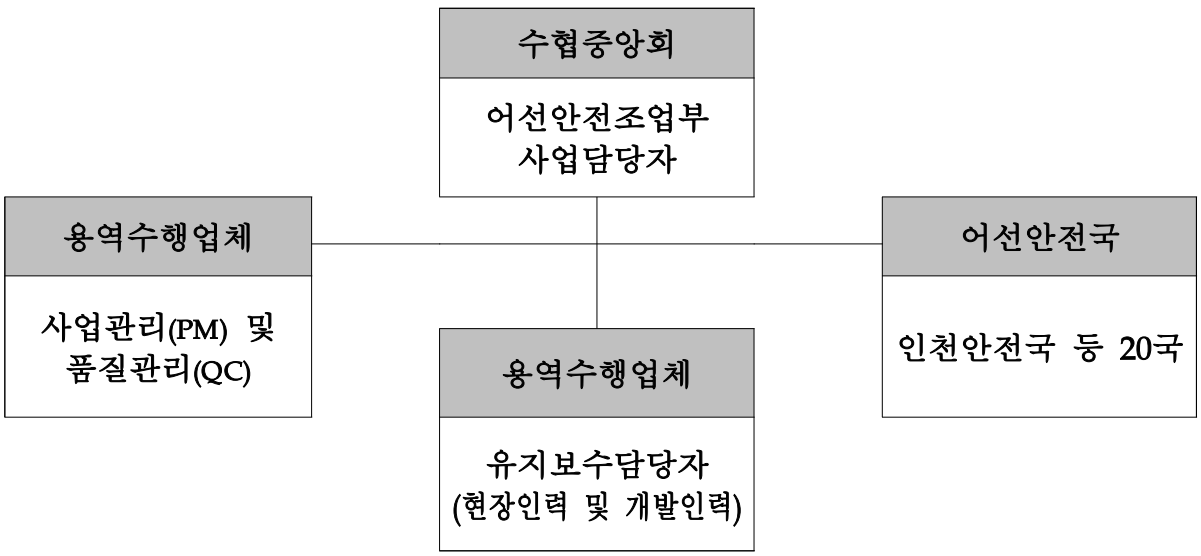

○ 역할

구 분	역 할	해당조직
사업총괄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유지보수 관리 등 사업 총괄관리	어선안전조업부 (발주기관)
시스템운용	○ 어선안전관리 통신망의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여부 확인	각 어선안전국 (인천 등 20국)
사업관리(PM) 및 품질관리(QC)	○ 주간(월간) 및 수시보고 등 각종 보고 체계 관리 ○ 형상관리(산출물 등) 및 품질관리 수행 ○ 비상연락망 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수행업체
과업수행 (유지보수)	○ 제안요청 및 과업에 따른 사업수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관리, 보안관리 등)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용역수행업체

3. 추진일정

구 분	2026년		2027년				비고
	11월	12월	1월	…	11월	12월	
- 입찰공고							
- 제안설명회							
- 협상 및 계약							
- 용역수행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Admistration Requirement) (6)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2	유지보수 특수사항
	MAR-003	유지보수 업무범위
	MAR-00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MAR-005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
	MAR-006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nagement Human resource Requiremetn)(3)	MH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MHR-002	조직 및 인력구성
	MHR-003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8)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PMR-004	산출물 제출(완료보고서)
	PMR-005	산출물 제출(수시보고서)
	PMR-006	산출물 제출(기타)
	PMR-007	유의사항
	PMR-008	안전·보건 확보 조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3)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tn)(1)	QUR-001	성과관리 및 품질보증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2)	SER-001	보안관리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SER-002	보안관리 지침준수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3)	COR-001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2	지식재산권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나. 통신장비 철거 및 중계소 최적화

- ㅇ 안전국 SSB 27㎒ 및 고정국 장비 철거
- ㅇ 울진안전국 죽변중계소 철거
- ㅇ 여수안전국 거문도중계소 철거
- ㅇ 완도안전국 해남중계소 철거 및 장비 이전 설치
- ㅇ 고흥안전국 여자만중계소(여수송신소) VHF장비 일부 철거(관리국이관)
- ㅇ 울릉안전국 천부중계소 철거
- ㅇ 군산안전국 오성산중계소 철거 및 일부 장비 이전 설치

2. 상세 요구사항

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어선안전관리 통신망」의 HW, SW(개발SW 및 상용SW 포함)에 대한 일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이 상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비상대응방안 수립 및 긴급대응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점검, 환경설정변경, 장애조치등을 위해 시스템의 가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 및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성능점검을 수행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부품이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기능·성능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업체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을 활용해 즉시 현장수리를 원칙으로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복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애접수, 장애처리, 결과보고 및 작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 절차 등 포함)을 수립 및 대응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보안위협 등의 상황 발생 시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타 시스템 및 장비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동 시스템 확장 및 이기종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관한 협조 요청 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역서 등의 계약내용 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특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관한 특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어선안전관리 통신망」의 조난신호 수신율 개선 및 오수신 검증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HW 및 SW 개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SSB·VHF제어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증상 및 노이즈(전기잡음 등) 개선을 위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장소(중계소 등) 중 온습도센서 및 냉난방 제어장치가 미설치된 장소에 대해 용역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전원제어장치(PDU), 무정전전원제어장치(UPS), 비상발전기 등을 시설제어서버에 연동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설정하여야 한다. ※ 연동가능한 장치별 제조사현황 · 전원제어장치(PDU) : ATEN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세방전기, APC, 크로마아이티 · 비상발전기 : 오성기전(컨트롤러) · 냉난방기제어 : ㈜지엠티 · 온습도센서 : ATEN, ㈜정암테크 · 도어센서 : ㈜정암테크 · VPN장치 : ㈜퓨처시스템

		○ 용역수행업체는「어선안전관리통신망」의 DBMS(Oracle)에 대해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인 전문업체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적의 동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RAC 구성, Archive Log 상태 확인 등 DBMS 일체의 기능·성능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STT(Speech To Text)솔루션에 대해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인 전문업체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성인식률 개선 및 최적의 동작상태 유지를 위한 업데이트, 최적화 작업, 기능·성능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점검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별 주요 수행 내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하는 시스템 구성요소(HW, SW, 소모품 등) 일체에 대한 성능·기능·품질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업무범위

구분	대상	주요 수행 내용
어선 안전관리 통신망 (HW/SW) 유지관리	주·보조 원격제어장치	o 주·보조원격제어장치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관리 수행 ※ 주원격제어장치(휴대형) 포함 · 동 장치에 적용된 HW, SW, 소모품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보고서 작성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체크를 수행하고 보고서에 이를 포함한다.
	SSB·VHF 제어장치	o SSB·VHF제어장치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관리 수행 · 동 장치에 적용된 HW, SW, 소모품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분	대상	주요 수행 내용
어선 안전관리 통신망 (HW/SW) 유지관리		* 긴급보고서 작성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체크를 수행하고 보고서에 이를 포함한다.
	VHF-DSC 송수신기	o VHF-DSC송수신기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관리 수행 · 동 장치에 적용된 송수신기, 안테나, 급전선, 써지보호기 등 소모품을 포함한 구성물 일체의 유지관리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보고서 작성시 송·수신부 전반에 대해 체크를 수행하고 보고서에 이를 포함한다.(출력파/반사파/SWR 측정자료 포함) · 음성 송·수신 및 리모트 제어상태 점검 등
	서 버	o VoIP, 운영관리, 시설관리, VHF-DSC호출, STT, DB 서버를 대상으로 하며,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관리 수행 · 각 서버의 HW 및 적용된 SW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서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및 OS, 응용SW 업데이트 등의 관리 지원 o DBMS 및 STT엔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등의 관리 지원 · DBMS 및 STT엔진의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파트너사를 통한 점검 수행 · DBMS(Oracle)의 RAC, Archive Log 상태 확인 등 DBMS 일체의 기능·성능 점검 수행 · STT엔진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및 기능·성능 점검 수행
	네트워크 장치	o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 VPN을 제외한 L2스위치, 스위치허브를 대상으로 하며, 동작상태 점검 및 점검보고서의 작성과 구성/변경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L2스위치 관련 포트미러링 등 네트워크 정책 설정 및 기술지원 수행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o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동작상태, 배터리 동작여부 포함 · Serial 컨버터 및 IP/PORT 설정 상태 점검 포함

구분	대상	주요 수행 내용
어선 안전관리 통신망 (HW/SW) 유지관리		・시설제어서버 연동 상태 점검 포함
	전원제어장치 (PDU)	o 전원제어장치(PDU)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전원제어장치(PDU)의 동작상태 및 포트별 라벨링 상태 포함 ・포트별로 연결된 장치의 결선상태 점검 포함 ・IP/PORT 설정 등에 관한 점검 포함 ・시설제어서버 연동 상태 점검 포함
	냉난방기 제어장치	o 냉난방기 제어장치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냉난방기 제어장치의 동작상태 점검 내용 포함 ・IP/PORT 설정 등에 관한 점검 내용 포함 ・시설제어서버 연동 상태 점검 내용 포함
	시설물 제어장치	o 시설물 제어장치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o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설물 제어장치의 동작상태, 포트별 라벨링 상태 점검 내용 포함 ・IP/PORT 설정 등에 관한 점검 내용 포함 ・시설제어서버 연동 상태 점검 내용 포함
	응용 SW	o 응용SW의 기능·성능·품질 등에 관한 유지보수 수행 o 응용SW와 관련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내용 포함 ・오류 등 결함 발생에 대한 응용SW 수정 내용 포함 ・그 밖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활동 등
	기 타	o 사업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수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에

구분	대상	주요 수행 내용
		대한 유지보수 활동(점검 및 장애복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보안관리	보안관리 업무	o 보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의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및 용역 수행업체의 보안관리계획에 따른 보안관리 활동 수행
사업 및 품질관리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o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서 및 장애 접수·처리 대장, 점검 내역서 등에 대한 산출물 관리 · 필요 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작성 ·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방안 등 장애 재발 방지 활동 수행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제시 - 오류 등 결함 발생에 대한 응용SW 수정 산출물 관리 · 그 밖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물의 작성 등
	예비품 관리	o 예비장비·예비부품 현황 관리 · 원활한 유지보수활동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 확보된 예비품 현황 제출 - 송수신기 3대, 원격제어장치 3대, 전원제어장치 3대 - 사진, 구매영수증 포함, 제품스펙 등
헬프 데스크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업무	o 장애접수, 긴급대응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시간 : 영업일 기준 09~18시 운영 (단, 장애발생 시 365일 24시간 대응) · 장애 접수 및 장애 대응에 필요한 온라인 점검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 장애 접수 및 조치 내역 등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 보고 - 장애 접수·처리 대장 관리 등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에러로그 및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 버그 또는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분석 및 개선 조치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DBMS 구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광역원격제어시스템」의 STT솔루션은 분기 1회 이상,「VHF-DSC시스템」의 Oracle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정기적인 DATA, OS 등 각종 파일의 백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점검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 활동 및 장애발생 시 점검·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긴급점검 이외의 상황에서도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스템(장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긴급점검(장애복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복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립된 절차에 따른 장애복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4시간이내 복구작업착수, 24시간이내 복구조치 완료 (단, 도서지역은 72시간이내, 독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조치)

		- 정해진 시간 내 복구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복구 불가 사유 등을 포함해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복구시간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장애 조치를 위한 복구작업 시 원격점검 또는 직접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점검으로 조치불가능한 문제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HW, SW, OS, 통신장비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원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복구대책(복구절차 등)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후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장애원인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긴급(장애)점검 계획서 · 점검보고서 서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하며, 헬프데스크의 기본 운영시간은 영업일 기준 09:00 ~ 18:00까지로 하되,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 운영요원은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장애접수 및 처리와 기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헬프데스크 운영요원이 장애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즉시 현장 점검 인력에게 연락을 위해 즉시 점검 및 장애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의 운영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헬프데스크의 운영요원은 장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PM)·품질관리(QC)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헬프데스크 운영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투입인력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구성은「어선안전관리 통신망」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방안 및 지속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의 과실 또는 수행능력 부족으로 발주기관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업체에게 추가 투입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종료 후(또는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또는 발주기관과 기간을 협의하여 다음 수행업체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사항	정의	조직구성방안 및 투입인력의 역할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조직 구성 시 사업관리/품질관리/현장점검/개발인력/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PM)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의 총괄 및 세부적인 조정·관리 수행과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QC)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HW/SW/NW)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의 수행상태 관리, 동일 장애 발생 예방 및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개선 활동과 그 밖의 발주기관이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HW/SW/NW)에 대한 기술지식 및 장애복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및 장애예방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기술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SW의 버그 및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은 운영시간 동안 상시 유선연결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접수처리 및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 수행 조직도 · 투입인력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요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상주인력은 요구사항 'MAR-006', 'PMR-001'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야간 및 공휴일 등의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공백 방지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동일 등급 이상의 자격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인수인계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대안 제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 수행 조직도 · 투입인력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table>
<tr><td colspan="2">요구사항 분류</td><td>프로젝트 관리</td></tr>
<tr><td colspan="2">요구사항 번호</td><td>PMR-001</td></tr>
<tr><td colspan="2">요구사항 명칭</td><td>의사소통 관리</td></tr>
<tr><td rowspan="2">요구사항
상세설명</td><td>정의</td><td>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td></tr>
<tr><td>세부
내용</td><td>○ 보고 계획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시기</th><th>보고서</th></tr>
<tr><td>착수보고</td><td>-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td><td>계약 후
7일 이내</td><td>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td></tr>
<tr><td>월간보고</td><td>- 유지보수 내역보고(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td><td>월1회</td><td>월간보고서</td></tr>
<tr><td>완료보고</td><td>-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td><td>완료시점</td><td>완료보고서</td></tr>
<tr><td>수시보고</td><td>-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수시보고</td><td>수시</td><td>수시보고서</td></tr>
</table>
※ 보고서 및 회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td></tr>
<tr><td colspan="2">산출정보</td><td>·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td></tr>
<tr><td colspan="2">관련 요구사항</td><td></td></tr>
</table>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대한 협조사항 등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용역수행업체는 계약 기간 중 매월 말일 전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관리 시설물·통신망에 대한 가동율(장애사항 및 대책 포함) - 긴급점검 보고서 -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서 완료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 유지보수에 최종 수행결과 - 유지보수 세부내역 ※ 긴급점검 내역, 개발·개선내역 등 - 향후 개선 및 추진방안 제시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수시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용역수행업체는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시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보고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보고서 등을 사업 완료 전까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산출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보완 - HW/SW 개선·개발 등과 관련된 산출물(개발문서, 소스코드 등) - 시스템(또는 장비) 운영매뉴얼 작성 및 보완 - 시스템(또는 장비) 장애조치 매뉴얼 작성 및 보완 - 그 밖의 발주기관이 필요로하는 산출물
산출정보		·기타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가 제안한 모든 제안내용(제안서 등), 협상내역,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요청 내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내용이 우선한다. ○ 사업수행 중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과업 수행 방법의 변경 등으로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 - 기타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사업 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인력 증원 및 증원 시기를 용역수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협상내용에 기재된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 중 수집된 모든 기록과 자료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 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 기술평가' 시 입찰 참자가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입찰참가자 중 평가 기준이 미달될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근거(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 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 및 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용역수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계획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또는 긴급 점검 시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이전, 구성 변경 등을 위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구성 변경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로 하며, 인계 및 인수 받는자 모두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과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해당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 방법,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작업 성과를 관리 및 검증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의 점검 수행상태(작업내용, 점검보고서 등) 및 각종 산출물(월간보고서,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보완·관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과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수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인계인수 기준(PSR-003)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발주기관 요구 등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가이드 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관리 중 발주기관의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사업 참여 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입찰참여과정 및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의 착수시까지 투입인력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아래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발주기관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VPN 등의 보안장비 및 라우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개 불가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침해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시스템의 취약성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 관련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동 사업 관련 기타 보안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단,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에 대한 작업의 결과 및 산출물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동 사업을 통하여 자체 생산 또는 수정한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이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내부규정,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

		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인해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자기의 비용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의 계약에 의해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통신장비 철거 및 중계소 최적화

ㅇ 안전국 SSB 27㎒ 및 고정국 장비 철거

- 대상(27㎒) : SSB 35대(급전선, 안테나 포함)

안전국	허가장소	허가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호출명칭	안테나
인천	덕적도중계소	31-2014-10-00000003	SRT-1100SC	2707821	수협인천4	GP
인천	인천송신소	31-1984-10-0000038	IC-7600VTS	0403152	수협인천3	GP
태안	태안안전국	31-1983-10-0000593	IC-7600VTS	0204385	수협태안-1	GP
군산	어청도중계소	31-2011-70-0000001	SRT-1100SC	1907211	수협군산1	GP
군산	군산송신소	31-1984-10-0000028	SRT-1100SC	1609547	수협군산	GP
목포	임자도중계소	31-2014-30-0000001	IC-7600VTS	0403154	수협목포임자6	GP
목포	임자도중계소	31-2014-30-0000001	IC-7600VTS	0204386	수협목포임자6	GP
목포	목포수신소	31-2001-30-0000002	SRT-1100SC	4803872	수협목포5	GP
목포	흑산도중계소	31-1983-10-0001685	IC-7600VTS	0403157	수협목포흑산4	GP
목포	흑산도중계소	31-1983-10-0001685	SRT-1100SC	4003152	수협목포흑산4	GP
목포	진도중계소	31-1996-30-0000004	IC-7600VTS	0403030	수협목포지산1	GP
목포	진도중계소	31-1996-30-0000004	SRT-1100SC	0403155	수협목포지산1	GP
여수	돌산중계소	31-2021-30-0000004	SRT-1100SC	21K2671	수협여수돌산	GP
여수	돌산중계소	31-2021-30-0000004	SRT-1100SC	7306793	수협여수돌산	GP
여수	거문도중계소	31-1983-10-0001684	SRT-1100SC	18E0085	수협여수1	GP
여수	거문도중계소	31-1983-10-0001684	SRT-1100SC	9603112	수협여수1	GP
포항	송신소	31-1984-10-0000034	SRT-1100SC	8708017	수협포항	GP
울진	죽변중계소	31-1983-10-0000611	SRT-1100SC	22B2911	수협죽변	GP
울진	죽변중계소	31-1983-10-0000611	SRT-1100SC	5500002	수협죽변	GP
울릉	수신소	31-1984-10-0000029	SRT-1100SC	7803418	수협울릉	WHIP
통영	거제중계소	31-1997-20-0000001	SRT-1100SC	22L2931	수협통영	GP
통영	통영송신소	31-1984-10-0000030	SRT-1100SC	1609545	수협통영	GP
삼천포	수신소	31-1989-10-00000001	SRT-1100SC	7803377	수협삼천포	WHIP
울산	수신소	31-1984-10-0000033	SRT-1100SC	21L3033	수협울산1	GP
제주	애월중계소	31-1997-80-0000001	SRT-1100SC	9204033	수협제주5	GP
제주	우도중계소	31-1983-10-0000614	SRT-1100SC	18E0086	수협제주2	GP
제주	서귀포중계소	38-1996-80-0000001	SRT-1100SC	6908883	수협제주4	GP
제주	모슬포송신소	31-1984-10-0000031	SRT-1100SC	7803417	수협제주3	GP
완도	대둔산중계소	31-2013-30-0000005	SRT-1100SC	22L2932	수협완도2	WHIP
완도	해남중계소	31-1983-10-0000595	SRT-1100SC	8708015	수협완도1	GP
보령	수신소	31-2018-50-0000001	IC-7600VTS	020540	수협보령	GP

안전국	허가장소	허가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호출명칭	안테나
고흥	여수송신소	31-2019-30-0000001	SRT-1100SC	19E4705	004402313	GP
고흥	나로도중계소	31-2019-30-0000002	SRT-1100SC	19E4708	수협고흥2	GP
고흥	녹동중계소	31-1998-30-0000003	SRT-1100SC	19E4707	수협고흥1	GP
창원	수신소	31-2021-20-0000001	SRT-1100SC	2C4605	수협창원	GP

- 대상(고정국) : SSB 21대(급전선, 안테나 포함)

안전국	허가장소	허가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안테나
본부	인천송신소	21-1984-10-0000440	SRT-1100SC	21L3032	INVERTED L
부산	고정국	21-1984-10-0000442	SRT-1100SC	6907733	INVERTED L
인천	수신소	21-2013-10-0000002	SRT-1100SC	18E0073	INVERTED L
울산	수신소	21-1984-10-0000451	SRT-1100SC	21F4416	WHIP
강릉	송신소	21-1984-10-0000453	SRT-1100SC	7306792	WHIP
동해	수신소	21-1984-10-0000455	SRT-1100SC	7306795	WHIP
속초	송신소	21-1984-10-0000449	SRT-1100SC	7803427	WHIP
태안	수신소	21-1983-10-0000590	SRT-1100SC	7803380	INVERTED L
보령	수신소	21-2018-50-0000019	IC-7600VTS	0205038	WHIP
군산	송신소	21-1984-10-0000452	SRT-1100SC	4A05430	Wire-다이폴
목포	수신소	21-2015-30-0000050	SRT-1100SC	2707839	INVERTED L
여수	수신소	21-1984-10-0000446	SRT-1100SC	7803446	WHIP
완도	송신소	21-2018-30-0000034	SRT-1100SC	18C4652	INVERTED L
고흥	수신소	21-2019-30-0000017	SRT-1100SC	19E4703	INVERTED L
포항	송신소	21-1984-10-0000450	SRT-1100SC	21F4412	INVERTED L
울진	송신소	21-1984-10-0000444	SRT-1100SC	18K5081	INVERTED L
울릉	수신소	21-1984-10-0000673	SRT-1100SC	2707826	WHIP
통영	송신소	21-1984-10-0000443	SRT-1100SC	2707833	WHIP
삼천포	수신소	21-1984-10-0000461	SRT-1100SC	2707835	Wire-다이폴
창원	수신소	21-2021-20-0000001	SRT-1100SC	21C4608	INVERTED L
제주	수신소	21-1984-10-0000441	SRT-1100SC	6908885	WHIP

-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특히 고정국 안테나의 경우 안전국 의견을 확인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철거시기는 안전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철거 진행사항은 매달 정리하여 보고(무선국허가사항, 고정국 역L형 안테나 철거유무 포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 울진안전국 죽변중계소 철거

-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VPN포함)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ㅇ 여수안전국 거문도중계소 철거

-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VPN포함)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거문도중계소에 설치된 에어컨의 경우 철거하여 여수안전국 관할 돌산중계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중단파대 SSB 통신장비도 위와 같이 철거하고 여수안전국 시설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ㅇ **완도안전국 해남중계소 철거 및 장비 이전 설치**

- SSB 27㎒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VPN포함)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중단파용 SSB의 경우 철거하여 완도안전국 대둔산중계소로 이전 설치하고 동일한 통신성능이 보장될 수 있게 시설하여야한다.
- VHF 음성 1장치는 전부 철거하여 제주안전국 애월중계소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VHF 안테나의 설치 위치는 기존 애월중계소 27㎒ 안테나의 위치로 하되 현장환경과 제주안전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다.(시험통신포함, 안전국 주·보조원격제어 화면 세팅)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철거 및 이전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및 이전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ㅇ **고흥안전국 여자만중계소(여수송신소) VHF장비 일부 철거**

- 음성1장치는 유지하되 그 외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유지하는 음성 1장치의 관리국은 고흥안전국에서 여수안전국으로 한다.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ㅇ **울릉안전국 천부중계소 철거**

-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VPN포함)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장비 철거시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ㅇ **군산안전국 오성산중계소 철거**

- 통신장비와 원격제어장치(VPN포함)는 렉에서 탈거, 안테나는 철거하여 안전국 담당자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안테나를 제외하고 급전선 등은 철거하여 폐기처분 한다.
- 철거된 VHF 음성 1장치와 DSC 3장치는 군산안전국 송신소로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VHF 안테나의 설치 위치는 송신소 옥상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현장환경과 군산안전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다.(시험통신포함, 안전국 주·보조원격제어 화면 세팅)
- 사용자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된 장비를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장치명을 삭제하여 현재 운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을 최신화 한다
- 철거 및 추가된 장소의 무선국 허가사항도 해당 전파관리소를 통해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당 장소의 시설물은 설치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완료시 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시 철거 전, 후 사진대지를 포함한다.

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마. 최근 3년 이내 해상분야 통신기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실적이 건당 2억원 이상 또는 유지보수사업 실적이 건당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담당자로부터 사전 검토바랍니다.

바. 본 사업의 특성상 단독입찰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불허)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ㅇ 용역능력이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근거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다. 선정절차

ㅇ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

ㅇ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술평가 70%와 가격평가 30%의 비중으로 실시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ㅇ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ㅇ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회「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한도	비 고
기술평가(70)	■ 객관적 평가	20	
	- 경영상태	5	
	- 유사사업분야 수행 실적 (3년간)	10	
	- 기술인력 보유상태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적 평가	50	
	- 추진전략 및 조직구성	8	
	- 기술부문	9	
	- 수행부문	15	
	- 관리부문	13	
	- 지원부문	5	
가격평가(30)	■ 입찰금액	30	
계		100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어선안전조업부

다. 등록 및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조)

구분	목 록	별 지
입찰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중소기업 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⑩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⑪ 입찰참가 실적증명서	1호 서식

제출 서류	① 일반현황 및 연혁	2호 서식
	② 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호 서식
	③ 주요사업실적(총괄표)	4호 서식
	④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	5호 서식
	⑤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6호 서식
	⑥ 참여인력 총괄명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7호 서식
	⑦ 참여인력 및 이력현황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8호 서식
	⑧ 가격제안서/ 산출근거(산출내역)와 함께 밀봉제출	10호 서식
	⑨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1호 서식
	⑩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2호 서식
	⑪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파일 (USB메모리)	9호 서식
	⑫ 개인정보 위탁 처리 계약서	별지12호 서식

* 별도 서류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기한 내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ㅇ 제출서류는 입찰 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입찰 참가시 조건사항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다. 본회는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 본 사업수행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나,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각종 자료 등은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권리는 본회에 귀속된다.

마. 용역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용역수행을 위해 타인의 권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부담 등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용역수행업체는 착수단계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규격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매수 : 제안서 100~150페이지 이내, 요약본 40페이지 이내
- 본문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렬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부수 : 원본파일(PPT, HWP, PDF 등)이 저장된 USB메모리 1개
- 제출방법 : 입찰등록시 원본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제출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용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한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아. 제안서와 제안요청서간 상충될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 된다.

자.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사전협의 없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7. 제안평가회 및 평가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이후 본회가 지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일정 및 세부계획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평가위원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5인 이상 8인 이내로 본회가 구성

ㅇ 제안평가회는 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들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등의 과정은 생략한다.

- 발표 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참석자가 대리 응답 가능
-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중 답변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은 모두 녹취되어 향후 협상시 계약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

○ 제안내용의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위원명단, 평가작업 장소, 일정 등은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소속 담당자의 답변만이 유효함.
- 문의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 어선안전 통신망(윤도수, 전요셉) / ☎ 02-2240-2317 / 02-2240-2382

별지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 1부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부

4. 주요 사업실적(총괄표) ····· 1부

5.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총괄표) ····· 1부

6.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1부

7. 참여인력 총괄명부 ····· 1부

8.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1부

9. 제안서 작성서식 ····· 1부

10. 가격제안서 ····· 1부

1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공고명 기재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② 인감신고서 1통
③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총부채					
4. 자기자본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유동자산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 경영상태 (단위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영상태 (최근3년)	최근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최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연 번	과 업 명	발주기관	개 발 기 간	사 업 비
<<합계>>				

*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사업 실적 제출(입찰공고일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총괄표)

유사분야	과 업 명	발주기관	개 발 기 간	사 업 비
<<합계>>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원본) 제출(입찰공고일 기준)
  - 유사용역 범위 : 해상분야 통신기기 원격제어시스템(SSB·VHF) 구축 및 유지보수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명부

연번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투입기간	참여임무

(참고)

①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②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

③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첨부)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정보통신공용역 등록수첩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 고
I.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 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용역내용 및 실적	·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행기간, 참여형태 및 사업규모 등의 실적을 제시하며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등을 제시	
	4.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시	
Ⅲ. 기술 및 수행 부문	1. 추진전략	· 발주기관의 동 사업 목표 달성과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2.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 투입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동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3. 유지보수방안	· 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 예방 활동 및 반복적인 장애 발생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행 방안 기술 · 비상 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계획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스템별(장비별) 세부점검 사항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 고
	4.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예비품관리방안	· 예비품 확보계획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 일정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사업관리방안	· 점검일정관리, 투입인력 및 예비품 관리, 보고서 작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진행사항 보고 및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 착수, 완료보고 - 월간, 수시보고 등	
	4. 품질관리방안	· 긴급점검, 장애복구, 장애예방 활동, 점검보고서, 정기보고서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성과와 산출물의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 보안관리방안	· 동 사업에 관한 보안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방안	· 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처 방안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기술지원방안	·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 · 시스템간 연동, 시스템의 이전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기타지원방안	· 기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Ⅵ. 기타	1.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추가 제안할 사항을 상세히 기술	

* 목차 항목중 입찰서류로 기 제출한 서류(자격증, 참여인력 이력 현황 등)는 생략하고, 해당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고 사업명 기재
제 안 사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고
합 계			
부가가치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 산출근거 1부 (필히, 함께 밀봉 제출)

년 월 일

○ ○ ○ ○ ○ ○ 대표이사 ㅇㅇㅇ : 직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세 부 명 세 서

☐ 총사업비 : 일금 원 (₩)

[① 개발비 : 일금 원 (₩)]

[② 시스템 : 일금 원 (₩)]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수량 (A)	단가 (B)	금 액 (C=A×B)	비 고
계					
부가가치세					
총 합 계					

(참고)

①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 내역은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②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③ 업체 제안 가격은 개발비,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각 본회 예산 범위 내에서 제시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별 첨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 1부

2. 기술평가(주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 1부

3.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 ····· 1부

【별첨 1】

기술평가(객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 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가. 경영상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AAA	5.0	
		AA+, AA0, AA-	4.5	
		A+, A0, A-	4.0	
		BBB+	3.5	
		BBB0, BBB-	3.0	
		BB+, BB0	2.5	
		BB-	2.0	
		B+, B0	1.5	
		B-	1.0	
		CCC+ 이하	0.5	

나. 유사용역실적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유사 분야에서의 유지보수 경험	용역 또는 구축 경험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금액 9억이상	10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금액 7억이상 9억미만	8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금액 5억이상 7억미만	6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금액 3억이상 5억미만	4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금액 1억이상 3억미만	2	

○ 유사용역 범위 : 해상분야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단순 물품납품 제외)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해당경력 또는 자격증)	10인 이상	5	
		8~9인	4	
		6~7인	3	
		4~5인	2	
		2~3인	1	

【별첨 2】

기술평가(주관적)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단위: 점수)

구 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채점
객관적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수행실적	- 유지보수 실적	10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수행인원 보유	5	
주관적 평가 (50)	추진전략 및 조직구성 (8)	- 사업의 목적 및 제안사항 이해도의 적정성	2	
		- 추진전략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의 적정성	3	
		-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3	
	기술부문 (9)	-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식능력의 적정성	2	
		- 시스템별(장비별) 세부점검 방안의 적정성	4	
		- 시스템 장애재발 방지 및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3	
	수행부문 (15)	- 긴급점검 수행방안의 적정성	4	
		- 장애예방 및 반복장애해결 수행방안의 적정성	3	
		- 비상대책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3	
		- 헬프데스크 운영방안의 적정성	3	
		- 예비품 관리방안의 적정성	2	
	관리부문 (13)	- 추진계획 및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5	
		- 품질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6	
		- 보안대책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2	
	지원부문 (5)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방안의 적정성	3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이 없을 경우 0점으로 산정**	2	
가격 평가 (30)	입찰가격	- 수협중앙회 규정에 의한 평점 산식에 따름	30	
합 계				

【별첨 3】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 명	(서명)

【 제안업체명 : 】

□ 입찰가격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 평가	30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1

①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서식 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3. 자기평가 산출근거

【서식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도급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20 년 월 일

(인)

【서식 3】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 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별표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개인별)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표10. 자료 인계인수대장
별표11. 장비 반출대장
별표12.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 허용 신청서
별표13. 생성형 AI 활용 정보 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

○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전산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 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용역사업 입찰시) ① “사업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보안요구 조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 또는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2항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위약금 부과는 [별표 4]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제2조(용역사업 계약시) ①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의 범위 ·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별도로 [별표 5]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인원, 장비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표 6]과 [별표 7]의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사업자”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이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업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고 “사업자”가 정과 부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다.

제5조(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한다.

제7조(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3.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등

②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제거를 위해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설계시)
2.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종료시)
3.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

제9조(용역사업 완료시) ①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출물 보안을 위해 ”사업자”는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수량 외 임의적 추가발행을 할 수 없다.

③ “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할 수 없다.

④ 용역사업 완료 후 “사업자”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이나 삭제 장비 등을 통해 완전 소거 조치하여야 하며 [별표 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제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수행 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별표 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용역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사업자“에 제공할 경우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수협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규정된 대외비 자료 ④ 그 밖에 수협중앙회 정보보안관리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관계자 행정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발주기관 승인없는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등 경징계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 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됨.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5]

비밀유지 계약서

수협중앙회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수협중앙회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 수행을 위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수협중앙회의 허락 없이 복제 등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OOO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OOO은 수협중앙회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수협중앙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수협중앙회와 OOO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11-6)		○○시 ○○구 ○○동 ○○번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	
위대리인 어선안전조업부장	(직인)	대표자	(직인)

[별표6]

보안서약서

(대표자 및 서약집행자용)

수협중앙회 「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사업담당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표7]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개인별)

1. 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수협중앙회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수협중앙회 내 보관치 않겠습니다.
2. 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수협중앙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치 않겠습니다.
4. 나는 수협중앙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를 수협중앙회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5. 나는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며,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문서권한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6.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7. 나는 수협중앙회에서 나의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나는 퇴직(프로젝트 종료, 파견해제)시 수협중앙회에서 제공받은 수협중앙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수협중앙회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수협중앙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수협중앙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 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 · 이용 항목	직위, 생년월일, 성명
보유 · 이용 기간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표8]

외주업체 사업종료 체크리스트

○ 부서 작성

부 서 명		확 인 자	
사 업 명			
보 안 프 로 그 램	▢ NAC ▢ 백신 ▢ 매체제어 ▢ 문서보안 ▢ Privacy-i		
인 터 넷 사 용 여 부	사용 / 미사용		
개 인 정 보 보 유 여 부	보유 / 미보유		
보 유 시 사 유			

○ 외주업체 작성

업 체 명		직 원 명	
전 화 번 호			
하 드 디 스 크	▢ 포맷 ▢ 주요파일삭제		
삭 제 방 법	▢ HDD이레이저 ▢ 일반포맷		

20 년 월 일

담당자 :

보안관리자 :

[별표9]

용역수행 자료 미보유 확약서

수협중앙회「어선안전관리 통신망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제거하였으며, 복사본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표10]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계약기간	20 . . . ~ 20 . . .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출력물·전자파일 등)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성명	인수자 서명	회수 일자	회수자 성명	회수자 서명

[별표11]

장비 반출입대장

사업명		계약기간	20 . . . ~ 20 . . .

연번	구분 (반입·반출)	기종	제품명	장비 관리 번호	장비 식별 번호 (S/N)	장비 반출입 일자	신청자 성명	자료 무단 반출 점검 결과	백신 점검 결과	사업 종료시 완전 삭제 여부	용역 사업 담당자 성명	용역 사업 담당자 서명

* 장비 식별번호는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를 기재하고 시리얼번호가 없는 장비의 경우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사용

※ 모든 작업장소(발주기관 내, 원격지 등)에서 용역업체 소유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반출입 사항은 필히 대장에 작성

[별표12]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 허용 신청서

기본정보	사용자	성 명		업체명	
		직 위		연락처	
		PC IP주소			
	용역감독관	성 명		기관명	수협중앙회
		직 위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내역	생성형 AI 종류	*예시) 챗GPT*			
	접속 주소 (URL)				
	이용기간	*예시) 20 . . . ~ 20 . . . (사업기간 내로 한정)*			
	활용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수집·이용 목적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을 위한 신청서 징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업체명, 직위,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사용 시 주의사항		o 국정원「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준수 o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 금지 등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용역감독관 : 서명 또는 (인)

[별표13]

생성형 AI 활용 정보 관리대장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업체명		생성형 AI 이용기간	20 . . . ~ 20 . . .

연번	날짜	생성형 AI 종류	입력 정보	생성물	사용자 성명	사용자 서명	감독관 성명	감독관 서명